

전체 장비의 거래금지와 부분 폐기

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 나 11436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 다 202753 판결로 확정 —

1. 사건의 개요

노칭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 회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 사건이다. 원고는 노칭장비 내부의 이차 전지용 극판 스테킹(적재) 장치에 관한 특허(제 10-1329073 호)를 근거로, 이를 포함한 노칭장비 전체의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부품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때 전체 장비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전체 장비까지 폐기하여야 하는지이다.¹

전체 장비와 침해 장치

노칭장비 전체: 극판 가공부터 검사·적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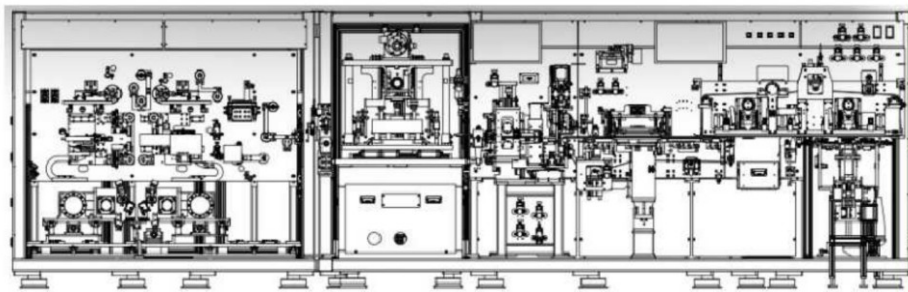


그림 1. 피고 실시제품의 전체 설계도면(판결문 69 면). 노칭은 극판에 전극 탭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장비에는 소재 풀기, 노칭, 절단, 세정, 검사 및 적재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²

극판 스테킹 장치: 이송된 극판을 멈추고 아래로 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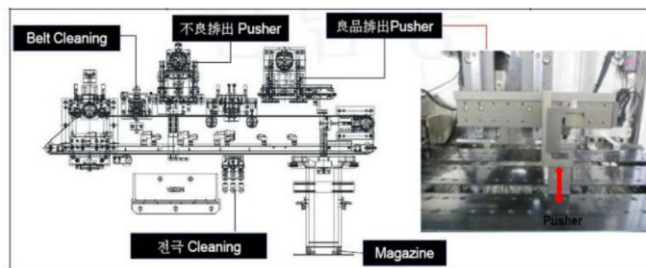


그림 2. 주문이 특정한 별지 제 2의 사.항 장치의 도면·사진(판결문 69 면 상단). 푸셔(Pusher)는 극판을 아래로 누르고, 매거진(Magazine)은 극판을 받는 적재부이다. 특허의 핵심은 극판을 정지시킨 뒤 수직으로 낙하시켜 손상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적재는 양극·분리막·음극을 교대로 쌓는 전지 조립공정과 구별된다.³

1 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 나 11436 판결, 5 면(당사자·특허), 44 면(금지), 45 면(부분 폐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 다 202753 판결, 3 면.

2 특허법원 위 판결, 60 면(전체 장비의 기능), 69 면(그림 1·2의 원본).

3 특허법원 위 판결, 59 면(극판의 정지 후 수직 낙하 및 손상 방지), 69 면(별지 제 2의 사.항 도면·사진).

가격 비교: 전체 장비의 평균 매출액과 부분 원가를 구별

비교 대상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수치와 의미
노칭장비 전체	대당 약 4.16 억 원: 198,041,224,874 원 ÷ 476 대. 2014~2024 년 집계의 대당 평균 매출액이며 개별 견적가격은 아니다.
극판 스테킹 장치	별도 판매가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제품의 관련 구성 원가 비중 약 25%. 피고: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 자재비 비중 6.52~7.45%.
비교의 한계	각 수치는 제품·대상 구성·비용 기준이 다르고 당사자 주장이다. 위 비율을 4.16 억 원에 곱하여 스테킹 장치의 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⁴

2.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별지 1 목록 제 2 의 사.항 기재 스테킹 장치를 포함한 노칭장비의 생산·사용·양도 등을 금지하되, 폐기는 그중 스테킹 장치 부분의 완제품·반제품으로 한정하였다. 전체 장비가 거래된다는 사정과 전체 장비를 폐기하여야 할 필요성은 구별하였다. 스테킹 장치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고, 특허와 무관한 구성이 다수인 전체 노칭장비를 폐기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전체 노칭장비의 폐기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명시하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⁵

3. 평석

(1) 전체 장비의 거래금지를 인정한 결론의 타당성

피고는 침해 장치를 포함한 장비를 장기간 생산·판매하였고 생산 자원도 보유하여 재침해 우려가 인정되었다. 침해 장치를 완제품에 조립하여 일체로 판매하더라도 그 장치의 실시라는 실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단위인 노칭장비까지 금지한 것은 비침해 부분에 독점권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해 장치를 포함한 거래를 차단한 것이다. 주문도 '사.항 기재 장치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⁶

다만 원심이 든 '일체 거래', '중요한 기능', '판매에 대한 영향'은 보강 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핵심은 청구항을 충족하는 침해 장치의 포함 여부이며, 부품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영국 HTC 판결도 작은 회로에 관한 특허라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금지가 과도해지지는 않으며, 비침해 대안의 이용 가능성과 전환비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⁷

⁴ 특허법원 위 판결, 56 면(수량·매출액), 62 면(양측 원가·자재비 주장). 30%는 손해액 산정상 매출 기여 평가이며 가격 비율이 아니다.

⁵ 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 나 11436 판결, 2 면(주문 제 1 의 가·나항), 45 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 다 202753 판결, 3 면(이유 제 3 항). 이하 면수는 첨부 판결문 인쇄면 기준이다.

⁶ 특허법원 위 판결, 43 면(침해 구성의 구비), 44 면(계속적 생산·판매, 재침해 우려 및 전체 장비의 금지 필요성).

⁷ HTC Corp. v. Nokia Corp. [2013] EWHC 3778 (Pat), para. 62 ("depends on the availability and cost of non-infringing alternatives"). 같은 판결 para. 61 은 기존 물품의 인도명령 부담을 장래 금지의 효과와 구별한다.

(2) 전체 장비의 폐기를 배척한 결론의 타당성

전체 폐기는 특허와 무관한 구성의 가치까지 돌이킬 수 없게 소멸시킨다. 원심은 스테킹 장치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무관한 구성이 다수인 전체 노칭장비를 폐기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작동의 일체성이 곧 물리적 분리불가능성이나 전체 폐기의 필요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한 것이다. 독일 법원 역시 부분 폐기나 기술적 변경이 동등하게 유효한 대안이면 전체 폐기를 배제한다.⁸

(3) 판결 이유의 보완과 적용 범위의 한정

첫째, 증거 부족과 적극적 사실인정을 구분해야 한다. 원심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일체화'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 분리가 쉽고 저렴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전체 폐기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분리 방법·비용, 분리 후 잔존 장비의 활용 가능성, 재조립에 의한 침해 재현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설득력이 더 높았을 것이다.

둘째, 원심의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침해에 제공된 설비만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정밀하지 않다. 특허법 제 126 조 제 2 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구별한다. 스테킹 장치는 전자의 침해제품이며 그 제조설비는 별도 대상이다. 양자를 혼용하지 않고 각 대상의 현존·처분권한과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⁹

셋째, 부분 폐기보다 덜 침해적인 개조가 가능한지도 후속 사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례처럼 특정 구조의 변경으로 침해 상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개조를 대안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러한 선택권을 주문에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기능을 정지하거나 부품만 떼어 보관하는 것으로 확정된 폐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외국법의 공통 결론으로 과장하면 안 된다. 미국은 금지명령 자체에 형평법상 요건을 요구한다. 일본 미용기 사건은 부품에 기술적 특징이 있어도 청구항이 미용기 전체였고, 중국 보온컵 사건의 재고 폐기 명령도 뚜껑 제거와 전체 폐기의 우열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인도명령 역시 물리적 파괴와 동일하지 않다.¹⁰

⁸ OLG Düsseldorf, Urte. v. 5.11.2020 – I-2 U 63/19, Rn. 130 ("In diesem Fall gebührt dem milderen Mittel regelmäßig Vorrang"). 독일 특허법 제 140a 조 제 4 항은 폐기 등의 비례성 제한을 명시한다.

⁹ 특허법 제 126 조 제 2 항; 특허법원 위 판결, 45 면(폐기의 일반론), 46 면(기계설비의 현존·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에 관한 증거 부족), 47 면(해당 청구 기각).

¹⁰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 (2006); 知財高裁大合議判決令和 2 年 2 月 28 日・平成 31 年(ネ)第 10003 号, 1 頁(「美容器を廃棄せよ」); 最高人民法院(2021)最高法知民终 2301 号, 2023 年 6 月 20 日(원심의 "销毁库存侵权产品" 명령 유지). 각 판례의 구제 대상과 판단 범위를 구별하여 참조한다.

(4) 판결의 의의와 실무상 주의사항

이 판결의 의의는 '금지는 완제품 단위, 폐기는 침해 장치 단위'라는 구제의 차등화를 대법원이 유지하였다는 데 있다. 다만 모든 부품 특허 사건에서 전체 폐기를 금지한 추상적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전체 폐기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피고는 실효적인 분리·교체·개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판결이 일반적 증명책임 전환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특히 폐기 대상은 단순한 푸셔 하나가 아니라 주문과 별지에 특정된 스테킹 장치 부분이다. '120ppm 이상이고 낙하 유닛이 있다'는 포괄적 특정만으로는 다른 구성요소의 구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 또한 반제품은 주문이 정한 구조를 갖춘 미완성 물건에 한정되며, 피고 보관 물품의 폐기 명령을 이미 고객에게 이전된 장비의 회수·폐기 명령으로 확대할 수 없다. 기술적 구성, 청구 대상 및 집행 대상을 각각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¹¹ 특허법원 위 판결, 43 면(별지 제 1 항 제품의 구성요소 증명 부족), 2 면(보관 장소·스테킹 장치 부분·반제품의 정의). 46 면의 선택적 청구 해석도 나머지 청구에 대한 재판단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보충: 복잡제품과 단순제품을 구분한 적용

(1) 제품의 복잡성은 고려요소이며 독립된 법적 기준은 아니다

여기서 복잡제품은 여러 부품·기능이 결합되어 특허발명이 일부에만 적용되는 제품을, 단순제품은 구성과 기능이 비교적 단순한 제품을 뜻한다. 이는 설명을 위한 구분이다. 부품 수나 가격만으로 금지·폐기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먼저 청구항의 보호대상이 부품인지 전체 조합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술적 특징이 한 부품에 있다는 사실과 특허의 보호대상이 그 부품이라는 사실도 구별해야 한다.

(2) 복잡제품: 전체 거래금지와 부분 폐기의 구별이 특히 중요하다

스마트폰·자동차·생산장비처럼 복잡한 제품도 침해 부품을 포함한 상태로 생산·판매하면 그 부품의 실시를 수반하므로 전체 제품에 대한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와 예외는 국가별 법리에 따른다. 복잡제품에서는 설계변경 기간, 비침해 대체부품의 공급 가능성, 고객·제 3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형평·비례성 심사가 허용되는 법제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복잡성이나 낮은 부품가격만으로 금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¹²

이미 생산된 복잡제품의 폐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침해 장치의 분리·교체로 침해를 실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나머지 장비에 활용가치가 남는다면, 전체 폐기는 비침해 부분까지 소멸시키므로 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품이 분리불가능하거나 개조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체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복잡제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분 폐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¹³

(3) 단순제품: 전체 폐기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으나 자동적이지 않다

예컨대 단순한 생활용품의 핵심 구조에 특허가 적용되어 이를 제거하면 제품의 기능과 잔존가치가 거의 없어지고, 실효적인 개조도 불가능하다면 전체 폐기를 정당화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단순한 용기라도 침해 뚜껑을 비침해 뚜껑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전체 용기를 폐기할 필요는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이며, 앞서 언급한 중국 보온컵 판결의 판시사항은 아니다.

(4) 대상판결의 평가: ‘복잡성’보다 ‘분리가능성과 폐기의 필요성’

노칭장비는 특허와 무관한 구성을 다수 포함하므로 위 구분상 복잡제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심이 전체 거래금지를 인정하면서 스테킹 장치 부분만 폐기하도록 한 결론은 그 특성에 부합한다. 다만 판결은 분리가 쉽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분리불가능성과 전체 폐기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자가 일반화할 명제는 ‘복잡제품은

¹²독일 특허법 제 139 조 제 1 항 제 3 문은 개별 사정과 신의칙에 비추어 배타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비례적 가혹함을 예외 요건으로 정한다(“unverhältnismäßigen, durch das Ausschließlichkeitsrecht nicht gerechtfertigten Härte”).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tg/_139.html (2026. 9. 7. 방문). 미국의 형평법상 심사는 본문 각주 10 참조.

¹³독일 특허법 제 140a 조 제 4 항: “Die Ansprüche nach den Absätzen 1 bis 3 sind ausgeschlossen, wenn die Inanspruchnahme im Einzelfall unverhältnismäßig ist.” 폐기·회수 등에 관한 개별적 비례성 심사와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 고려를 규정한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tg/_140a.html (2026. 9. 7. 방문). 위 본문은 이를 대상판결의 필요최소한 법리와 비교하여 적용한 필자의 분석이다.

부분 폐기, 단순제품은 전체 폐기'가 아니라, '침해를 실효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폐기를 한정한다'는 것이다.¹⁴

¹⁴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 나 11436 판결, 45 면("이 사건 특허발명과 무관한 구성을 다수 포함"). 복잡제품이라는 분류는 판결의 명시적 용어가 아니라 필자의 설명이다. 침해 부품을 제거·교체한 제품도 청구항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확정된 폐기의무를 임의의 개조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본문 IV 참조.